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10. 12 선고 2022가단215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2. 9. 28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2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2. 9. 4. 접수 제263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피고들은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2. 11. 26. 접수 제358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안금선

별지